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- 10 호

「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 월 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대전디자인센터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명칭을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전디자인센터를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(제명, 안 제1조 등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산업건설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lms13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”를 “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대전디자인센터”를 “대전디자인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대전디자인센터(이하 “디자인센터””를 “대전디자인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,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“디자인센터는”을 “진흥원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9호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2항, 제6조 및 제7조 중 “디자인센터”를 각각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행할”을 “할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</u> <u>조례</u>	<u>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</u> <u>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<u>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대전디자인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설립) <u>대전디자인센터</u>(이하 “<u>디자인센터</u>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설립) <u>대전디자인진흥원</u>(이하 “<u>진흥원</u>”이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사업) <u>디자인센터</u>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그 밖에 <u>디자인센터</u>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</p>	<p>제3조(사업) <u>진흥원</u>은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재산출연 등) ① <u>디자인센터</u>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</p>	<p>제4조(재산출연 등) ① <u>진흥원</u>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라 한다)은 디자인센터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임원) 디자인센터에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디자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수익사업) 디자인센터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디자인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디자인센터는 사업연도마다

진홍원

제6조(임원) 진홍원

제7조(업무의 위탁) 진홍원

제8조(수익사업) 진홍원은

제9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진홍원은

② 진홍원은

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
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
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
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.

관계 법령

□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

- 제11조의2(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·진흥사업·기반구축사업 등(이하 이 조에서 "지역 디자인 사업"이라 한다)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·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